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721호 2021. 4. 8.(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7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 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72호 2021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고시 -------- 9

○ 사천시 고시 제79호 사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실안유원지(체험형숙박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0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482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21호

사천시 규칙 제77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사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사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조례공포안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조례공포안의 경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설명)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의 배경과 취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영 제28

조제2항제2호는 공포의결 또는 재의요구로, 제3호는 청구수리 또는 청구각하로 한다.

제11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4.8.>

의 안 번 호	
의결연월일	. . . (제○회)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 .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 심사필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4.8.>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건 ○건]

순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건 명	제.개정구분	페이지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4.8.>

제○회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 총: ○○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건 ○건)
회의내용	○ 별지 기재와 같음 - 심의 결과 (단위 : 건)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근거법규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2조

제○회 사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4.8.>

검 토 의 견 서

조례명					
의결일		이송일		재의요구 기한	
소관부서					
주요내용					
검토의견	*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				
검토결과	수용( ) 재의요구( )				

사천시 고시 제2021- 72호

2021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할 2021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8.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3. 사업의 목적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간 농로 확포장을 통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개소(L=3,507m, B=3.0 ~ 4.0m)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5. 사 업 비 : 900백만원(시비 100%)

6.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9개월간)

7.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6)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전화 055-851-8130)

◉사천시 고시 제2021-79호

사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실안유원지(체험형숙박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2-141(2002.06.14.)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유원지:실안유원지) 결정되고 사천시고시 제2021-51(2021.02.25.)호로 최종 도시관리계획(유원지:실안유원지) 결정(변경) 고시된 실안유원지(체험형숙박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실안동 8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실안유원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실안유원지내 체험형숙박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0,27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환경부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고 제2021-482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광고물 관련 업무 분야로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올바른 약칭 사용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옥바른 약칭 사용관련 내용 개정(안 제2조)

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관련 규정 개정(안 제12조)

다.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과장,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을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 서류 등) ①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 않도록 해야 --------.
1. 건축과장,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② ----------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